

# 이재상

변호사시험대비 Step 2  
강의계획서

## 박사 형법

# Test

## 진도별 모의고사+강의

출제가능성 높은 중요판례 중심 선택형 지문 구성  
총각론상 중요쟁점 및 최신판례의 중요쟁점을 빠짐없이 반영한 사례형 문제  
통합형 문제 대비 선택형 사례문제 풀이 연습  
매시간 핸드북을 통해 '실제' 답안작성의 포인트 확인 및 점검

### 일 정

2015. 9. 30(수) ~ 10. 13(화), 총 10회, 월~금, 오후

**시험** 오후 1시~2시 30분 **강의** 오후 2시 45분~5시 15분

※ 단, 상황에 따라 20분 정도 연장강의가 예상됩니다.

### 교 재

- 형법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해설지에 전문항 수록) (제공)
- 로스쿨 형법 핵심암기장(핸드북) (저자, 제공)
- 2015년도 변호사시험 제1, 2차 모의시험(선택형사례형) 문제해설(제공)

**출제경향  
분석 및 전망**
**제4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의 분석 및 향후 전망**
**1. 사례형 문제**

-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50점, 형소법 5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제1문의 주요 쟁점으로는 거스름돈 사기, 중간 생략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에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행위와 이를 매각처분 한 행위의 죄수관계 및 부동산 이종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1문은 출제가 예상되었던 각론의 주요 쟁점들을 엮은 것이지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명의신탁과 부동산 이종매매를 복합적으로 엮은 만큼 난이도와 완성도에 있어 대단히 높은 수준 높은 문제를 조합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 제2문은 결과적 기중범의 공동정범, 문서위조와 변조의 구별문제, 사자명의로의 문서위조의 문제, 신용카드 범죄 등이 출제되었는데, 특히 타인의 신용카드를 폭행을 가하여 취득한 행위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강도에 이를 경우와 공갈의 정도의 이를 경우로 나누어서 죄책을 물어보았다는 점에서 역시 난이도가 한층 올라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2. 선택형 문제**

- 선택형 문제는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2문제(30%),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0문제(25%)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출제방식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10문제, 각론 8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론중심의 총론의 비중이 판례 중심의 각론의 비중 보다 높아진 것이 예년과 다른 점입니다. 문제유형별로는 형법이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쟁점 중의 하나인 '우연방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이한데, 그만큼 형법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연방위의 문제는 법전협 모의고사 1-3회 문제에서 모두 출제되었기 때문에 최종정리 강의 때 이 쟁점이 출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가 본 시험에서 유형만 바뀌어서 출제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 그리고 선택형 사례문제는 2문제가 출제되었지만 그 형식은 사례형 문제로 출제해도 될 정도로 문제구성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각론 8문제는 모두 판례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출제 경향  
분석 및 전망**

- 문제구성에서 이채로운 점은 형법과목에서 좀처럼 출제되지 않는 법조문이 무려 3개 문항이나 출제되었고, 그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법이 출제되었는데, 형사법규정에 대한 위헌판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된 것이므로 형법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刑法典도 자주 챙겨 보는 공부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 지난 3회에서는 심지어 법고을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판례가 출제되는 등 지역적인 판례의 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이번 4회 시험에서는 누구나 예상했던 A급 또는 특A급 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2014년 최신 판례도 여러 개 출제되어 시험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 통합형 문제는 2문제를 제외하고는 8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 시험의 예측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험을 쉽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바,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는 만큼 선택형 문제의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 보다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3. 이후로의 형사법 공부방법**

-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르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형법각론을 중심으로 출제되었는데, 각론위주의 출제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제경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만큼 총론의 쟁점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강의 특징**
**1. 선택형 문제 출제 및 구성**

① 선택형 문제는 20문이 매일 출제됩니다.

② 모든 선택형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변사나 사시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변사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 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형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출제됩니다.

\* 최근 3년간 최신판례 중에서도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판례를 반영한 문제구성

\* 변호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집약한 문제구성

\*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출판례를 모두 망라한 문제구성

\* 2015년 8월까지 공보에 게재된 최신 중요판례로 지문구성

③ 선택형 이론문제를 위한 최적화된 형법이론을 모두 점검할 것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변사나 사시의 이론문제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에 최적화된 이론문제를 구성하겠습니다.

**강의 특징**
**2. 사례형 문제(100점 기준) 출제 및 구성**

- ①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출제함으로써 형법이론체계를 머리 속에 확실하게 세우고, 이를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연습함으로써, 합격할 수 있는 답안작성을 가능케 하여 변사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형법공부의 틀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방법은 제4회 변사에서 모든 기출쟁점들을 100% 적중함으로써 그 수험적합성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② 모든 수강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로스쿨 형법 핵심암기장」을 시험문제와 병행하여 유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철저한 문제분석이 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제5회 시험의 출제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 ③ 출제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채점의 포인트까지 점검하여 반드시 합격하는 답안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 ④ 최근 계속하여 바뀌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에 완벽하게 대비함으로써 출제유형의 변화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험문제에 대한 모범답안과 그것이 압축된 실전답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풍부한 내용고찰과 아울러 실제 답안지에 기입할 적정량의 답안내용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⑤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를 정리하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통합형 문제 출제 및 구성**

- ① 무려 10문제나 출제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문제는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그런데 통합형 문제는 그 본질이 객관식 사례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OX를 맞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② 선택형 20문 중 매일 2~3 문제는 객관식 사례로 출제하여 통합형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아주 효율적인 강의를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 형법 진도별 모강 Test

## 강의 특징

### 4.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의 학습

- ① 선택형 문제와 동일하게 사례형 문제에서도 법전협 모의고사는 사례형 문제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 ② 참고로 2014년 제1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2주간 부동산 명의신탁 횡령과 부동산 이중매매”를 연결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법전협 모의고사에서는 “절취한 타인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에 통장 명의인의 인장을 날인하고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출제되었습니다.
- ③ 물론 이 쟁점들은 변사 4회 시험에서 사실관계만 바뀌어 출제되었습니다. 비록 2주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횡령이 출제되어도 문제의 구성형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눈썰미가 있는 수험생이라면 엄청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법 배점 110점 중 거의 60~70점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 ④ 2015년도 변호사시험 제1, 2차 모의시험(선택형사례형) 문제해설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 강의 시간에도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 강의 진행

1. 강의는 문제에 대한 강평 및 해설강의로 진행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적 쟁점과 학설의 대립을 간단명료하게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개별적인 총각론쟁점들의 유기적 연결을 통하여 형법이론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2. 형법체계론의 확실한 정립을 목표로 선택형 문제의 중요지문 위주로 해설하면서 그 의미내용을 익히고, 문제풀이방식을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사례형 문제와 관련하여는 형법총각론의 중요쟁점들이 실제로 Case문제에 어떤 형식으로 출제되는가를 연습하고, 이를 효율적인 답안작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4. 「로스쿨 형법 핵심암기장」에 수록되어 있는 사례들을 부교재로 사용하여 실제 답안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점검할 것입니다.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시험 답안지를 제대로 잘 작성했는가에 달려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매 시간 실제 답안작성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 의 진 행**
**2015년도 시행 변호사시험 4회 사례형 기출문제와 본 강사 사례교재 및 모의고사 출제사례문제와 적중문제 비교**

① 甲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A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는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수표를 잘못 세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였다. 甲은 그 현장에서 A가 준 수표를 세어보고 1,000만 원이 더 지급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A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②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4억 원으로 B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에서 바로 乙 명의로 경료하였다. 그런데 乙은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X건물이 자기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X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③ 그로부터 한 달 후 乙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여 X건물을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런데 乙과 C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은 乙에게 X건물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였고, 이에 乙은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 전액을 받고 임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한편, 배우자 없는 甲은 乙의 처 丁이 乙과의 성격 차이로 잠시 별거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丁과 성관계를 맺었다. 乙은 丁과 甲간의 성관계 사실을 의심하고 丁에게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丁은 甲과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로부터 한 달 뒤 丁에 대한 이혼소송을 청구한 후 甲만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1.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60점)

**①번 설문과 동일 쟁점 - 거스름돈 사기**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6과 동일 쟁점】**

대학생인 甲의 아들 乙은 여자 친구와 헤어져 귀가를 하다가 담배를 사서 피우려고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카운터를 보는 아르바이트생 D가 착오로 과분의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 것도 모르고 그대로 받았다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 乙이 과분의 거스름돈을 교부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의 죄책을 검토하시오. (15점)

**적 중 사례**
**②번 설문과 동일 쟁점 -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31과 동일 쟁점】

보석상 丁은 강남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甲에게 간청을 하여 甲과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丁은 부동산명의인 A와 직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매수한 다음, 자기에게 건물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甲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팔아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갈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甲은 얼마 후 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는 C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특별법위반은 논외임.(10점)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1) -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2개의 횡령죄의 죄수관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32와 동일 쟁점】

B 주식회사 회계담당이사 丁은 과장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부하직원 丙을 술집으로 불러내어 某處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자신이 직접 거래에는 나서지 못하니 丙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M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M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 받고, 이를 명의수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간 과장승진에 번번이 탈락하여 온 丙은 향후 과장승진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는 직접 실거래자로 위장하여 부동산 소유자 M과 이 부동산을 매매계약을 맺고 丁의 돈으로 매금을 지급한 후 丙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연이은 증권투자의 실패로 악성채무에 시달리던 丙은 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려고 D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아직 D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E가 이 부동산을 더 싸게 사겠다고 하자 丙은 다시 이를 E에게 매도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논외임.(25점)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2) - 부동산 이중매매**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31과 동일 쟁점】

보석상 丁은 강남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하여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甲에게 간청을 하여 甲과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丁은 부동산명의인 A와 직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매수한 다음, 자기에게 건물의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바로 명의수탁자 甲에게 등기명의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아파트를 팔아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갈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甲은 얼마 후 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는 C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단 특별법위반은 논외임.(10점)

**적 중 사례**

甲과 乙은 후배인 V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①1) 2008. 3. 5. 甲과 乙은 함께 V의 자취방에서 V를 구타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V가 사망하자 乙은 당황하여 도주하였는데, 甲은 V의 자취방을 뒤져 V명의 A은행 통장과 V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훔친 후 도주하였다. ②2) 다음 날인 3. 6. 12:00경 甲은 V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고, 같은 날 15:00경 A은행에 가서 V명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V의 도장을 찍어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V의 통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같은 해 3. 8. 甲과 甲의 친구인 丙은 乙에게 찾아가 A은행에서 찾은 현금 1,000만 원을 주면서 乙 혼자 경찰에 자수하여 乙이 단독으로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만약 그렇게만 해주면 乙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하고 乙이 출소하더라도 끝까지 뒤를 봐주겠다고 회유하였다.

고민하던 乙은 2008. 3. 11. 15:00경 경찰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자신이 혼자 V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08. 4. 9. 乙만 상해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하지만 乙은 제1심 공판과정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하여 2008. 6. 16. 甲을 긴급체포하였다. 긴급체포 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은 甲의 소지품을 압수하였는데, 그 중에 V 명의의 직불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을 추궁하자 ③3) 甲은 乙과 함께 2008. 2. 중순경 V를 폭행하여 V 명의의 B은행 직불카드를 빼앗은 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甲은 2008. 7. 4.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9. 3.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그날 항소를 포기하여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丙은 甲이 체포된 후 숨어 지내다가 2013. 4. 29. 체포되었고, 같은 해 5. 15. 검사는 丙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1. 1)의 범죄사실에 대해 甲의 변호인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상해의 죄책만을 인정하려 한다. 甲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10점)

2. 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죄책을 폭행의 정도를 구별하여 논하시오. (20점)

**①번 설문과 동일 쟁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4와 동일 쟁점】**

甲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는 乙과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어느 날 오후 甲과 乙은 甲의 집 근처에서 만난 다음, 甲은 20여 미터 떨어진 골목 어귀에서 숨어서 망을 보고 乙은 빈 집인 甲의 집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그러나 공공롭게도 마침 甲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B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B는 乙이 지른 불에서 나온 유독성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20점)

**적 중 사 례**
**②번 설문과 동일 쟁점(1) - 공문서위조죄와 사자명의로의 사문서위조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전범위 사례 2와 동일 쟁점】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가던 甲은 다른 손님 乙이 택시에 두고 내린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였다. 그 지갑에는 乙의 동생인 사망한 丙의 자동차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 부분에 자신의 사진을 겹쳐 놓고 복사하여 甲의 사진이 들어간 운전면허증 사본을 만든 후, 인근 이동전화대리점에 가서 그곳에 배치된 이동전화이용계약서 용지에 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근처 인장가게에서 임의로 새겨온 丙 명의의 도장을 찍어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와 같이 만든 운전면허증 사본과 이동전화이용계약서를 자신이 마치 丙인 것처럼 가져와 그 대리점에 함께 제출하고 고가의 스마트폰 1대를 구입하였다. →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35점)

**②번 설문과 동일 쟁점(2) - 사자명의로의 사문서위조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6과 동일 쟁점】

사기꾼인 丙은 자신의 집과 인접한 대지 50평을 매수하려고 관청에 가서 그 소유자를 확인해보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는 F는 10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이 있지만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丙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丙은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얻어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F, 매수인 란에 丙이라고 F의 생전일자로 기재하여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丙이 死者인 F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F를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한 행위에 대한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적 중 사 례**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1) - 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5와 동일 쟁점】

(1) 甲은 밤 11:00경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여성 A(만 21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뒤 따라가, A가 자신의 아파트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자 甲도 함께 탄 다음 A의 머리채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12층 복도로 끌고 나와 간음하였다. 甲은 간음행위 도중 A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반지가 탐이 나서 강제로 빼앗은 후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甲은 간음행위가 끝난 후에 달아나려고 하다가 범죄 현장 바닥에 A의 핸드백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훔치나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것을 집어들었다. A의 손가방에는 역시 甲의 짐작대로 다액의 현금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다. 甲은 A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손가방은 땅바닥에 버린 후 도주하였다. 이때 甲의 간음행위로 인하여 정신이 없었던 A가 甲이 자신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취거해가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당연하였다. (2) 甲이 A의 신용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신용카드 뒷면에 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甲은 범죄현장에서 2km 정도 떨어진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A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B의 예금구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하고, 100만원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신용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25점)

☞ 강도나 절도는 모두 탈취죄로서 형법적 법리는 동일함.

**③번 설문과 동일 쟁점(2) - 편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2014년판 사례 27과 동일 쟁점】

홍대 앞 某 클럽에서 이른바 ‘죽돌이’로 통하는 乙은 클럽에서 부킹을 통해 사귀게 된 철모르는 부잣집 막내 딸 B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작심하였다. 甲은 사실은 B와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B와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신용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은 다음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K 은행 압구정동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20점)

☞ 사기나 공갈은 모두 편취죄로서 형법적 법리는 동일함.

# 형법 진도별 모강 Test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중요강의내용
1	9.30(수)	죄형법정주의,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과실범
2	10.1(목)	결과적 가중범, 위법성론, 책임론(1)
3	2(금)	책임론(2), 실행의 착수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음모
4	5(월)	공범이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동시범
5	6(화)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죄수론, 형벌론
6	7(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7	8(목)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절도죄, 강도죄
8	9(금)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9	12(월)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
10	13(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2),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선택형, 사례형 문제 강의진도는 동일합니다.

※ 사례형 문제의 진도범위는 누적됩니다.